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7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송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조(「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 중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6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
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5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	
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 </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	제53조(위원의 해촉)
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u>심신</u>	사고
<u>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u>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u>없는 경우</u> 또는 제45조의4제1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	<u> 견이 있는 경우</u>
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	제32조(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